

## /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/

2025. 11. 25. 개정

### ▶ 부분디자인 출원서 기재항목 간소화

종전에는 등록디자인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에 부분디자인인 경우 부분디자인의 등록이라는 사실 및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을 게재하도록 하였으나, 앞으로는 게재 사항에 부분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에 불필요한 기재사항을 정비(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10호, 제3항 제10호)

부분디자인 출원할 때 출원서에 부분디자인 여부 표시 要 → 不要

구법	현행법
10② x 가. ③ x 가. 부분디자인인 경우: 부분디자인의 디자인등록출원이라는 사실	삭제